



#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



수신 회원사 대표

(경유) 담당 부서장

제목 (사)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2024년도 회비납부기준 안내

- 귀 (회원)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(OCAP, 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)는 소비자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경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.
- 우리 협회에서는 정기총회(제37차-제5호, 21.02.25)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2024년도 회비 납부기준」을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 : 2024.1.1. ~ 2024.12.31. / 연회비

나. 2024년도 회비납부기준

(단위 : 원)

전전년도 매출액(2022년)	납부금액	비고
3조 이상	8,400,000	제37차 정기총회 의결
1조 이상 ~ 3조 미만	6,600,000	
5천억 이상 ~ 1조 미만	4,800,000	
1천억 이상 ~ 5천억 미만	3,000,000	
1천억 미만	1,200,000	

다. 회비산출기준

-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회비산출의 기준은 전전년도 매출액에 의한다.
- 제1항의 매출액 조사에 따른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한 대상 업체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등 매출액에 준하는 조사 자료에 의한다.
- 전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설법인 등의 경우에는 자산의 70%와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한다.

라. 문의 : (사)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국(ocap@ocap.kr, ☎ 02-3463-9400)

(별첨) 회비납부기준 변경 세부 안내 1부. 끝.

#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



간사  
국현승

팀장  
이윤미

사무총장 유수현  
전결07/25

시행 전략기획팀-207(2023.07.25.)

우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22호

전화 (02)3463-9400

전송 (02)3463-5326

접수

/ <http://www.ocap.kr/>

/ [ocap@ocap.kr](mailto:ocap@ocap.kr)

/ 공개

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추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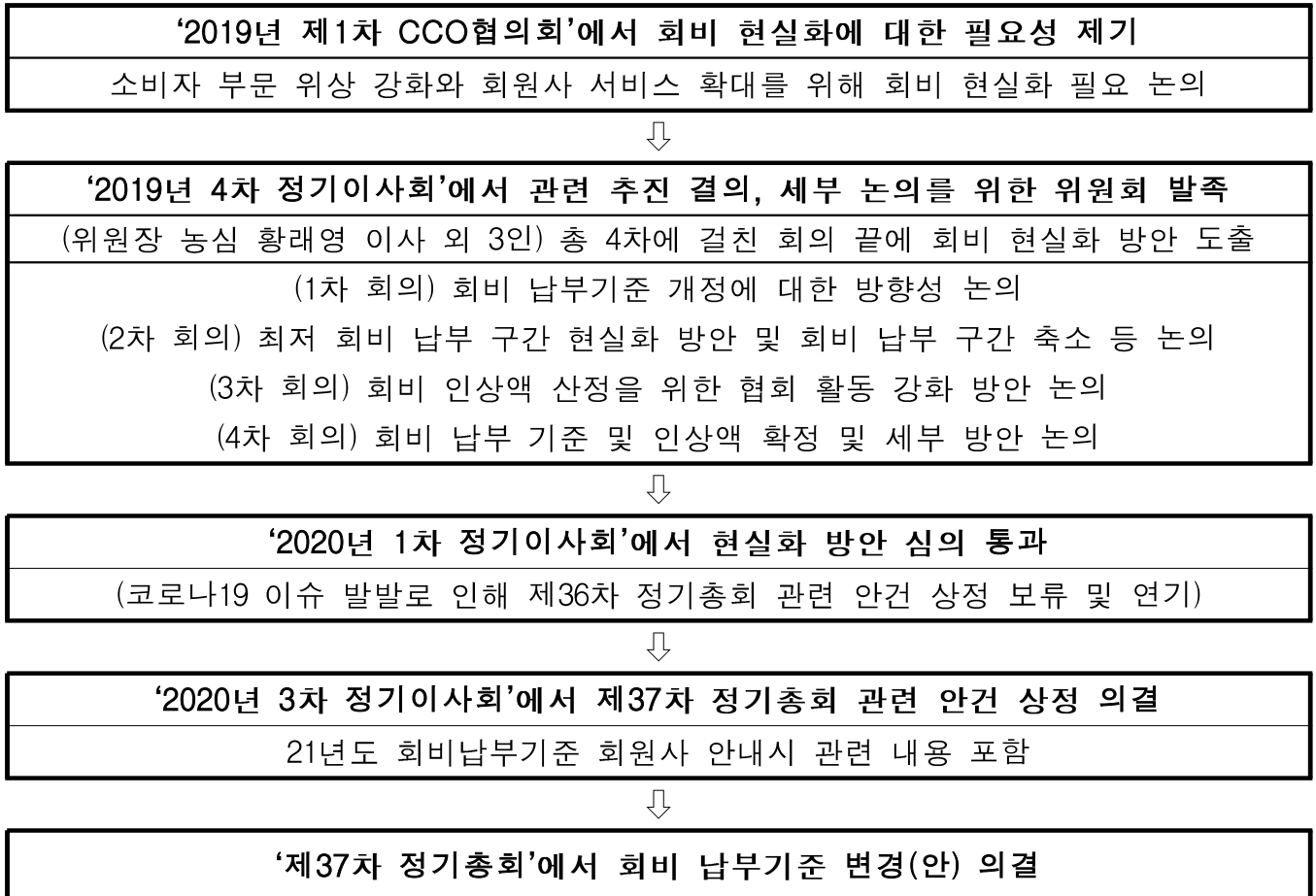
※ 본 세부 안내는 제37차 정기총회 제5호 안건 중 일부 내용입니다.

**1 추진 경과**

□ 추진 배경

협회 성장을 위한 자구책	성과	시사점
	[한계]	
(외부)수익 사업 확대	일시적 자금 확대 및 관심 촉발 (대외 신임도 저하/고유 업무 오해)	회비 현실화를 통한 목적사업 확대가 유력한 대안으로 판명
특별회비 후원 모집	후원사/임원사 위상 강화 (지속성 저하로 상호 부담 가중)	
협회 용역사업 확대	네트워크 강화 및 인지도 향상 (내부인력 활용으로 고유업무 위축)	
사무국 조직 개편	효율적 경영으로 만성 적자 해소 (서비스 약화로 만족도 저하)	

□ 추진 경과



### 소비자 부문 내 기업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 자임

-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회원사 간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사무국 네트워크 확대 구축
  - ☞ 공조/대변/변호 등 협회 차원의 상황별 전략 대응
- 소비자 부문 일반 분과별 이슈에 대해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 또는 의견 개선
  - ☞ 협회 명의의 입장 공표 또는 공문 발송 및 언론사 간담회 등을 통한 대외 의견 피력
- 기관 및 단체와의 일반 교류 협력 사업 확대
  - ☞ 협회 주관 간담회 또는 워크숍 개최 및 타 기관 및 단체 행사 참여 기회 제공

### 협회 고유의 회원사 서비스 및 혜택 강화

- 클레임정책자문 서비스 접근성 용이화 및 서비스 영역 확대
  - ☞ 클레임정책자문서비스 참여 채널 확대 및 대응 컨설팅 무상 제공
  - ☞ 클레임처리사례집 수정보완 회의 개최 및 회원사 무료 제공 서비스 확대
- 소비자 부문 정책적 행사 회원사 참여 기회 증대
  - ☞ 행사(컨퍼런스, 송년의 밤 등) 유료화 점진적 폐지 및 학술/정책 행사 추가 개최
- 소비자 부문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 후 정보 제공
  - ☞ 기관/단체와의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통해 비공식 정보의 접근성 향상

### 교육 커리큘럼 다변화 및 참여 폭 확대

- 경력별, 유형별, 방법별로 다각화된 프로그램 개발
  - ☞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니즈 분석 후 수요도 순으로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
  - ☞ 차세대 CS 업무 체계 구축 및 컨설팅 등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
- OCAP 교육 참여의 회원사/비회원사 간 차별화
  - ☞ 정례화된 기존 프로그램의 회원사 대상 무료화
  - ☞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 회원사 대상 정기적 제공
  - ☞ 축적된 교육자료 선별 후 재가공하여 회원사 제공

### 소비자 부문 내 OCAP 시그니처 사업 확립

- CCM 컨설팅, 고객만족도조사 등 목적 사업성 회원사 서비스 강화
  - ☞ 회원사 대상 해당 사업의 내부 정보 정기적 제공
  - ☞ (1년 이상 가입된) 회원사 의뢰시 용역사업 수행 비용 대폭 할인 적용
- 정부기관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자체 사업 모색
  - ☞ CCM 민간협의체, 클레임자율관리체 등 민간 주도 회의체 자체 운영
  - ☞ 우수 참여 회원사 대상 정부인증제 추진 및 포상제도 연계 강화
  - ☞ 소비자부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건의

**3**

**회비 납부기준 개정**

현행( '21년 기준)	
기준(매출액)	연회비(원)
10조 이상	3,704,660
6조 이상~ 10조 미만	3,550,830
1조 이상~ 6조 미만	3,341,830
6천억 이상~ 1조 미만	2,730,750
3천억 이상 ~ 6천억 미만	2,106,940
1천억 이상~ 3천억 미만	1,605,140
1백억 이상 ~ 1천억 미만	1,123,490
1백억 미만	641,840



목표회비 산정	회비 구간 조정	3개년 간 점증 조정	하위 구간 세부 조정
(월납입액 기준)	(8개 → 5개)	(30%씩 정률 인상)	(인상폭 조정)



개정				
매출액	1차년도 [ '22년도]	2차년도 [ '23년도]	3차년도 [ '24년도]	비고
3조 이상	497만원	646만원	840만원	(월70만원)
1조 이상 ~ 3조 미만	390만원	507만원	660만원	(월55만원)
5천억 이상 ~ 1조 미만	284만원	369만원	480만원	(월40만원)
1천억 이상 ~ 5천억 미만	230만원	230만원	300만원	(월25만원)
1천억 미만	120만원	120만원	120만원	(월10만원)